재해사례연구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5월 ○일 09:17분경 부산시 사상구 소재 ○○화학공장에서 전사지, 잉크, 이형제를 제조하기 위해 작업자 5명이 이형제 원료인 톨루엔등 유기용제 를 저장드럼에서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소형용기로 주입하던 중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작업자 3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위험물취급작업시정전기제전조치미실시 나.제전복미착용 다.작업방법불량

4. 동쫑째해예방대책

가.용제 주입구 개선

용제 주입구는 최대한 용기 바닥까지 내려 자유낙하로 인한 정전기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나 본딩 및 접지실시

용제저장드럼과소형용기사이의전위차를없애기 위해 본딩을 실시하고 각각의 용기 외함에는 정전기 가축적되지 않도록접지를실시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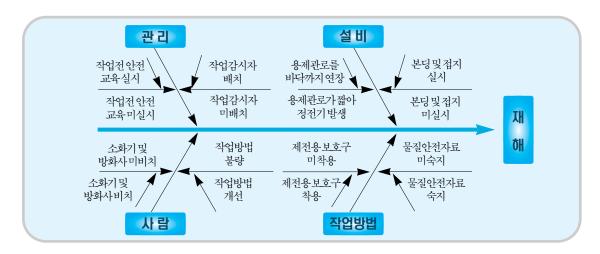
다.제전용보호구착용

용제 취급시 발생되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접지를실시하여야함.

5. 법위반사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 의 벌금

3. 째해 요인도



2 7 4 2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5월 ○일 20: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 공장내에서 변전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재 해자와 동료작업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변전실 바닥, 스위치 접점부위 등을 청소하던 중 발생한 분진이 변 압기 상부 부상측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작 업자가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러간 사이 재해자가 Æ (In)으로 작업하던 중 변압기 1차측 상부 부싱 충전부 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가.충전전로에대한안전조치미실시 나.부적절한청소도구사용

3. 재해 요인도

4. 동쫑재해예방대책

가.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청소작업시 안전 조치사항 주수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 점 검, 청소 등의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거 나절연용방호구등을설치하고 작업하여야함.

나.적절한 청소도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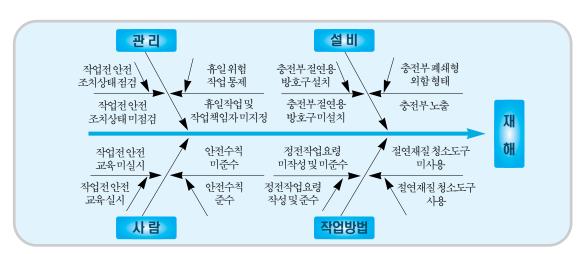
고압 및 특고압 충전부가 있는 변전실에서 청소작 업시 정전을 시킨 후 절연재질의 청소도구를 사용하 여야함.

다.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준수

변전실에서 청소작업시 충전부접촉에 의한 감전재 해가 우려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 정전작업요 령을 작성하고이를 준수하여야함.

5. 법위반//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재해사례연구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6월 ○일 10: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허브베어링)을 제조하기 위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재해자가 철재봉재 절삭가공기계인 CNC선반으로 허브베어링 가공작업 중 Loader Cripper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째해발생요인

가.CNC선반Loader Gripper 오작동 나.Loader 의 안전장치기능제거 다.정비또는이물질제거작업시운전정지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꽁깨해예방대책

가.CNC선반 Loader Gripper 오작동 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

설비 이설후 작업시작전 Gripper 작동감지센서 및 안전장치의 작동유무, 설비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 여야함.

나.CNCDor 연동장치작동상태점검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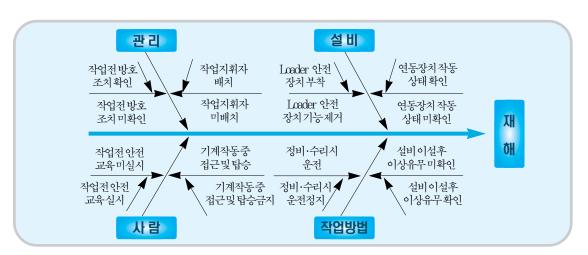
Loader 소재 투입구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작업자 가쉽게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 Loader의 소 재 투입구 도어와 연동회로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Loader 의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작업시 기계가 동을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5. 법위반//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6월 ○일 00:30분경 경북 상주시 소재 ○ ○작업장에서 설비 설치업체 소속 재해자가 동료근 로자와 함께 얼음 자동투입기 레벨조정 작업 중 호퍼 상부에서 내부로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깨해발생요인

가.추락방지설비미설치 나.정비수리등의 작업시운전정지미준수

3. 재해 요인도

4. 동쫑재해예방대책

가.추락방지설비 설치

文

H

-얼음이 투입되는 곳을 제외한 호퍼상부에는 견고 한 구조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호퍼외곽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함.

春

랔

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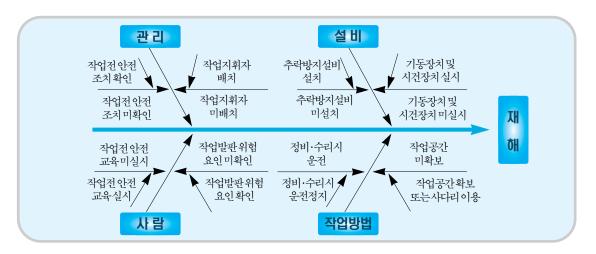
-철재계단설치 및 2m이상되는곳은 안전난간대또는 울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에는 미끄럼방지 테잎 등을 부착하여야 함.

나.정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정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함.

5. 법위반//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재해사례연구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5월 ○일 11:30분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주) 목재사업장에서 목재절단기인 갱립소오 (Gang Rip Saw)를 이용하여 파렛트 제작용 목재의 분할 절단작업을 수행하던 중 목재투입이 원활하지 않자 재해자가 하복부로 목재를 밀어넣던 중 반발에 의해 나오는 재가 재해자 하복부에 충격을 가해 사망 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기계설비이상발견시안전조치미실시 나.비상정지스위치설치위치부적절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기계설비 이상발견시 안전조치 철저 목재가공 작업시 둥근톱 사이에 목재가 끼거나 물 리는 등 이상발견시 기계의 동력을 즉시 차단하고 운 전을정지한 후점검을실시하여야함.

나.비상정지스위치 추가 설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자가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추가로설치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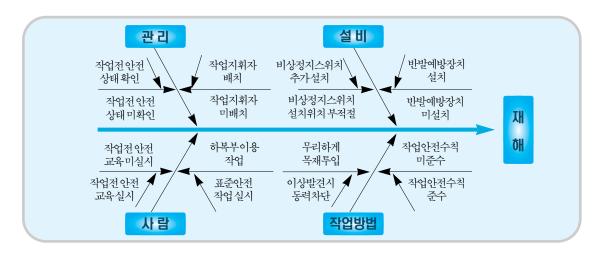
다. 표준안전작업 교육실시

목재가공작업에 앞서 작업 전 · 중 · 후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사항을 알려주고 표준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5. 법위반//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 의 벌금

3. 재해 요인도



1. 깨해발생 경위

2003년 6월 ○일 17:50분경 울산시 남구 ○○건설 (주)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부 벽체 견출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도장용 고정앵커에 로프를 결속하고 달비계발판에 걸터 앉아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로프가 풀리면서 60m 아래로 추락하여사망한 재해임



2. 깨해발생요인

가.달비계로프결속상태점검미실시 나.안전대미착용(관리감독소홀) 다.작업방법불량

3. 째해 요인도

4. 동쫑재해예방대책

업

작

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로프작업자가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를 걸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를확보하여야함.

春

랔

ב

나. 작업시작전 달비계 점검 철저 달비계로프의 결속상태,손상유무, 부착상태 등에 대한작업시작전점검철저

다. 안전대 착용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철저 추락위험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상황관리감독철저

라 작업방법 개선

로프이용작업시에는반드시작업보조자를 배치하여작업도구및 자재 등을 건네주고 안전대를 걸어 주는 등 2인1조작업수행철저

5. 법위반사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31조제1항근로자 안전교육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